

## 기일지정 신청서

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(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, 박홍우 부장판사)  
원고 김명호,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,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 
(휴대폰:010-5590-8913)  
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,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

위 사건의 변론재개관련, 민사소송규칙 제43조(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)에 따라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6년 7월 25일

위 원고 김명호



서울고등법원(민사 제2부 나) 귀중

